

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7] <개정 2013.3.23>

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(제2조제3항 관련)

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열거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. 다만,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